

제 1 부
원산지 규정

제 1 절
일반 조항

제 1 조
정 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 가. "류·호" 및 "소호"라 함은 HS의 품목분류표에서 사용되는 류·호(4단위) 및 소호(6단위)를 말한다.
- 나. "분류된"이라 함은 특정 류·호 및 소호에 따른 상품 또는 재료의 분류를 말한다.
- 다. "탁송품"이라 함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상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과 관련된 하나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 또는 그러한 운송서류가 없는 경우 하나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을 말한다.
- 라. "과세가격"이라 함은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결정된 산정가격을 말한다.
- 마. "공장도 가격"이라 함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당사국 내의 제조자의 공장도 상품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가격은 동 상품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격을 포함하고, 동 상품의 수출시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다.
- 바. "물품"이라 함은 재료, 상품, 또는 그 밖의 품목을 말한다.
- 사. "HS"라 함은 이 협정의 서명일에 유효한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일반통칙과 주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아. "제조"라 함은 조립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 또는 가공을 말한다.
- 자. "재료"라 함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요소, 원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등

을 말한다.

차. "비원산지 재료"라 함은 이 부속서상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재료를 말한다.

카. "당사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를 말한다.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간 관세동맹에 따라, 리히텐슈타인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스위스를 원산지로 간주한다.

타. "생산품"이라 함은, 추후 다른 제조공정에서 사용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제조한 상품을 말한다.

파. "영역"은 영해를 포함한다.

하. "재료의 가격"이라 함은 사용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시 과세가격 또는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사국 내에서 지급한 재료의 최초 확인 가능한 가격을 말한다.

거.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라 함은 하목의 정의에 따라 준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말한다.

너. "수출자"라 함은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한다.

더. "수입자"라 함은 상품이 수입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입하는 인을 말한다.

러. "생산자"라 함은 상품을 재배, 채굴, 수확, 어로, 덧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하는 인을 말한다.

제 2 절 **"원산지 상품" 요건**

제 2 조 **원산지 기준**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상품은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가. 제4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된 상품

나. 제5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 경우, 그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통합하여 획득한 상품. 또는

다. 이 부속서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재료로부터만 당사국에서 획득한 상품

제 3 조 **원산지 누적**

1.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부속서의 의미 내에서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 타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는 일방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로 간주한다.

2. 이 부속서의 의미 내에서 일방 당사국에서 타방 당사국으로 수출되어 타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되었거나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수출된 경우 그 원산지를 유지한다.

3. 제2항의 목적상, 2개국 이상의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수의 재료가 사용되고 동 재료가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수출 당사국에서 거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는 최고 과세가격의 재료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재료의 과세가격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출 당사국에서 지급한 가장 높은 최초 확인 가능한 가격의 재료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 4 조 **완전하게 획득된 상품**

제2조가호의 목적상, 다음 상품은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 가. 당사국의 지층 또는 해저로부터 채굴된 광물성 상품
- 나. 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되거나 채집된 채소
- 다.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산 동물
- 라.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산 동물로 만든 생산품
- 마.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수렵, 낚시, 또는 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 바.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어느 국가의 영해 밖에서 획득된 어획물 및 그 밖의 상품

- 사.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에서, 바호에서 규정된 상품으로만 제조된 상품
- 아. 당사국에서 수집된 것으로서 원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거나 복원 또는 수리될 수 없고, 폐품으로만 적합하거나 부품 및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재료
- 자. 당사국에서 수행한 소비나 제조공정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서 폐품으로만 적합하거나 부품 및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 차. 당사국이 자국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경우, 그 당사국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채취된 상품
- 카. 가호에서 차호에 명시된 상품으로만 그 당사국에서 제조된 상품

제 5 조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상품

1. 제2조나호의 목적상,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상품은 부록 2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위에 규정된 조건은 제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할 작업 또는 가공을 지칭하며, 그러한 재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당사국의 동일한 공장 또는 다른 공장에서 제조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록 2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상품이, 다른 상품의 제조에 재료로 사용된 경우, 그러한 다른 상품에 적용되는 조건들은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다른 상품의 제조에 재료로 사용되는 그러한 상품에 통합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록 2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는 비원산지 재료는 다음의 경우 사용될 수 있다.

- 가. HS의 제50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 상품에 대하여는,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격이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 나. HS의 제50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사용된 비원산지 기초 섬유재료의 총 중량이 사용된 모든 기초 섬유재료의 총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다. 이 항의 적용을 포함하여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격이 부록 2에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비원산지 재료가 이 조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는 상품의 소호와 다른 소호에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2항은 HS의 제1류 내지 제24류에 규정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부록 2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가공은 하나의 당사국 안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수출자 또는 최종 상품의 생산자는 작업 또는 가공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은 제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한다.

제 6 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공정

1. 제2항을 저해함이 없이, 이 부속서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다음의 공정은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간주된다.

가. 운송 및 저장기간 동안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나. 포장의 변경 및 포장의 해체와 조립

다. 세탁, 세척과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섬유류에 대한 다림질 또는 압착

마. 단순한¹⁾ 페인팅 및 광택 작업

바.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곡물 및 쌀의 도정

사. 당류 착색 및 각설탕 작업

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제거, 탈각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

카. 병·캔·플라스틱·가방·케이스 및 상자에 단순히²⁾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

1) “단순한”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 는 것 및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작업
- 타. 상표·라벨·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
- 파. 다른 종류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³⁾
-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한⁴⁾ 조립 또는 상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거. 단순한⁵⁾ 시험 및 측정
- 너. 동물의 도살. 또는
- 더. 가호 내지 너호에 규정된 작업의 둘 이상의 조합

2. 제1항의 의미 내에서 해당 상품에 행하여진 작업 또는 가공이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경우, 그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모든 작업이 함께 고려된다.

제 7 조 원산지 자격 단위물품

1. 이 부속서 규정의 적용상 원산지 자격 단위물품은 HS의 품목분류표를 사용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본 단위로 간주되는 특정 상품이어야 한다.
2. HS의 일반통칙 제5조에 따라 포장재가 품목분류상 상품에 포함된 경우, 그 포장재는 원산지 결정 목적상 원산지 자격 단위물품에 포함된다.

제 8 조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장이 별도로 발부되지 아니하고,

2) 각주 1 참조

3) “단순히 혼합”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혼합은 화학적 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적 반응은 분자간 결합의 파괴 또는 새로운 분자결합의 형성,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 배열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각주 1 참조

5) 각주 1 참조

장비, 기계, 도구 또는 차량과 함께 발송되는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는 해당 장비, 기계, 도구, 또는 차량과 일체로 간주한다.

제 9 조

세 트

부록 2에 규정된 규칙에 불구하고, HS의 일반통칙 제3조에서 정의된 세트는 그 모든 구성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세트가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된 경우, 비원산지 상품의 가격이 세트의 공장도 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세트 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제 10 조

중립재

상품의 원산지 결정상, 상품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다음 요소는 원산지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가. 에너지 및 연료
- 나. 공장 및 장비(그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포함한다)
- 다. 기계·공구·틀 및 금형. 그리고
- 라. 상품의 최종 구성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포함될 것으로 의도되지 아니한 그 밖의 상품

제 11 조

재료의 구분

1.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될 경우,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재료"라 함은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이 동일하고 일단 최종 상품에 통합될 경우 원산지 목적상 구별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의 재

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생산자는 재고관리를 위한 구분회계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회계기법은 당해 상품이 제조된 당사국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 적용, 그리고 유지되어야 한다. 선택한 회계기법은,

가. 획득 또는 재고로 관리되는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명확한 구분을 허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이러한 편의를 사용하는 생산자는 원산지신고서에 작성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는 상품의 수량에 대한 책임과 재료의 원산지 관련 모든 증빙서류 보관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관세당국의 요청시 생산자는 재고관리기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5. 당사국은 이 조에서 규정한 재고관리기법의 적용을 관세당국의 사전승인 대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 3 절

영역요건

제 12 조

영역 원칙

1 제3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절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은 당사국에서 중단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제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당국에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할 경우, 당사국에서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상품은 재반입시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가. 재반입된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나. 재반입된 상품이 수출되는 동안 좋은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할 것

제 13 조 **영역원칙의 면제**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록 4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2절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 원산지 지위의 획득은 당사국에서 수출된 재료에 대하여 해당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작업 또는 가공 후 재반입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14 조 **직접 운송**

1. 이 협정상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동안 그 상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 하에 있어야 한다.

2. 수입자는 관세당국의 요청시 제1항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적절한 증거를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당국에 제공한다.

3. 제1항의 적용의 목적상, 원산지 상품은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영역 외의 영역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운송될 수 있다.